

교원인사위원회규정

(제정 1983. 7.15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제6장제1절제3관에 따라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교무처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회의소집)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2.7.22., 2019.6.25.>

2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사위원회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
2.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
3. 건학이념의 구현 및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

4.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제7조(회의록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등)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교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(팀)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비밀엄수) 인사위원은 회의내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- ①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 규정은 198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제1호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